

# 1

## 장곡중학교 규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장곡중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장곡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원칙을 지키고 기본에 충실한 사람
2.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3. 몸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4. 나를 아끼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5. 공동체 속에서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람

###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장곡중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주소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곡로 10길에 둔다.

### 제3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 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
  2. 여름방학
  3. 겨울방학
  4. 단기 방학
  5. 학교장 재량휴업일
  6. 토요일무일

②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휴업일은 법정수업일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 계획에 의한다.

③ 제①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의 방학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①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제10조(학급편제)

- ①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우리 학교의 학급편제는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학급수로 한다.

### 제11조(학생정원)

- ① 우리 학교의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및 학교장의 통보에 응하지 않은 학생

## 제5장 교과 · 수업일수 · 교사 · 과정수료 · 졸업

제12조(교과) 각 학년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출결상황 관리)** 출결상황 관리는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교육계획 및 학업성적관리지침의 출결상황에 따른다.

#### **제16조(고사)**

- ① 고사는 학기별 지필평가 1회 이상 실시하며 교과목별 수행평가 척도에 의거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학생 평가 및 학업성적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경기도교육청 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별도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17조(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6장 입학 · 재취학 · 전·편입학 · 유예 및 면제**

#### **제18조(입학)**

- ① 본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에 의거하여 본교에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 **제19조(입학시기)**

-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전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0조(재취학)** 정원 외 관리·면제·유예중인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와 본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감안·조정하여 학년을 정하며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① 재·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재·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 ② 귀국 자녀의 재·편입학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한다.
-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새터민의 자녀의 경우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④ 재입, 편입, 전입생의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 편입, 전입이 불가능하다.

### 제21조(전·편입학)

① 본교에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제73조 및 제74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입학(전학,편입학 포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의거 학구내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인정 유학 한 학생의 경우 학군내 거주자에 한해 해당 학년 전체 정원의 2% 이내에서 특례 신·편입학 할 수 있으며, 미인정유학 한 학생의 경우 학군내 거주자에 한해 해당 학년의 정원 내 결원의 범위 내에서 신·편입학 할 수 있다. 학력 인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협의로 정한다. 단, 인정유학, 미인정유학의 구분은 “유학관련 학적 처리(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준한다.

③ 귀국자녀 및 특례입학자의 전·편입학을 위해서는 학교가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유예 및 면제)

①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8조에 의하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이 연장 가능하다.

**제23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길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2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 시행은 별도의‘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 시행 규정’에 의한다.

### 제27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8장 기타비용의 징수 등

### 제28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①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 제29조(학교생활규정)

-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별도의 학생생활인권규정을 둔다.

### 제30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32조(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①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①항 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 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33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곡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하며 별도의 학생자치회 활동규정을 둔다.

**제34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장 학업중단 예방

### 제35조(학업중단 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 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 제12장 보 칙

### 제36조(학칙개정 절차)

- ① 공(사)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1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학칙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학칙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학칙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학칙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학칙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⑧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